#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17 발의연월일: 2022. 10. 25.

발 의 자: 안호영·김승남·김홍걸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한병도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등을 직접 축산 또는 어업에 사용하였던 자가 폐업을 위하여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자경농민 등이그 직계영농자녀에게 농지·산림지·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발생한 증여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2022년 12월 3 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

일까지 10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이용하였던 자가 폐업을 위하여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 나.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해당토지 등을 이용하였던 자가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 다. 자경농민 등이 농지·산림지·어선·어업용 토지 등을 그 직계영 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71조제 1항).
- 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 일로 10년 연장함(안 제72조).
-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저축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 여세 및 상속세 감면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0).
- 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 또는 203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
- 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 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2023년"을 각각 "203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을 "2034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2023년"을 각각 "203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34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을 각각 "2032년"으로 하고, "2023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2년</u> 12월 31일까지 양도함	<u>2032년</u>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2년</u>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u>2032년</u>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

####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기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 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 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 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u>20</u>
32년	

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 략)
- ② ~ ⑧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u>2032년</u>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32년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u>202</u>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32
<u>년</u>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3년</u> 1월 1일부터 <u>2023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4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1. <u>2033년</u> <u>2033년</u> -
2. <u>2034년</u>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u>2032년</u>
<u>2</u>
<u>033년</u> <u>2033년</u>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 조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 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 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 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u>.</u>
② <u>2034년</u>
<u>.</u>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
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32년
<u> 2302 E</u>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 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 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 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 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 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다.

#### 1. ·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저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u>8</u> ) ①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 의2는 <u>2023년</u>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2년</u>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 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u>2033년</u>	
<u>2032</u>	'년-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등)
<u>203</u>	<u>2년</u> 
<u>2033년</u>	
	203
 1.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제106조의2(농업 · 임업 · 어업용 조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 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

- 1. 2. (생략)
- ② ~ ② (생 략)

	2	$\sim$	(5)	(현행과	같음)
--	---	--------	-----	------	-----

세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u>2033년</u>
<u>2032년</u>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② (현행과 같음)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

면) (1) 「해운법」 제24조제1
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
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u>2022년</u>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
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
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면) ①
<u>2032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